

## 「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전·후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조 ~ 제4조 ( 생 략 )</p> <p>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강원영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강원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1. ( 생 략 )</p> <p>2. 제6호 중 강원도청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,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,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추천기업에 대해 강원본부가 인정한 기업</p> <p>3. ~ 6. ( 생 략 )</p> <p>② ~ ⑦ ( 생 략 )</p> <p>제6조 ~ 제10조 ( 생 략 )</p> <p>제11조(자료제출) ① 금융기관이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본부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 생 략 ) 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&lt; 신 설 &gt;</span></p> <p>7.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</p> <p>② ( 생 략 )</p> <p>제12조 ~ 제14조 ( 생 략 ) 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&lt; 신 설 &gt;</span></p>	<p>제1조 ~ 제4조 ( 현행과 같음 )</p> <p>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강원영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강원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1. ( 현행과 같음 )</p> <p>2. 제6호 중 강원도청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,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,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추천기업에 대해 강원본부가 인정한 기업&lt;&lt;별표1&gt; 제6호 4) 해당 기업)</p> <p>3. ~ 6. ( 현행과 같음 )</p> <p>② ~ ⑦ ( 현행과 같음 )</p> <p>제6조 ~ 제10조 ( 현행과 같음 )</p> <p>제11조(자료제출) ① 금융기관이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본부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 현행과 같음 )</p> <p>7. 기술신용정보 대출 확인서 &lt;별지 제7호 서식&gt;</p> <p>8.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</p> <p>② ( 현행과 같음 )</p> <p>제12조 ~ 제14조 ( 현행과 같음 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2019. 1. 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2월 1일(2019년 4월 한도 배정시) 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p>- 전략지원 대상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</p> <p>- 제출자료 명시</p> <p>- 부칙 신설</p>

현행				개정(안)				비고
<b>&lt;별표 1&gt;</b> <b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b>				<b>&lt;별표 1&gt;</b> <b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b>				
번호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2)</sup>	전산코드	번호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2)</sup>	전산코드	
1~2	(생략)	(생략)	(생략)	1~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3	혁신기업	(생략) - 금융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및 기술신용정보 대출(대출금원장에 동 대출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장 명의 확인서 제출<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>)(기술신용정보 대출의 경우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(T1~T4 등급)을 요건으로 함)	A3	3	혁신기업	(현행과 같음) - 금융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또는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(대출금원장에 동 대출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장 명의 확인서 제출<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>)(기술신용정보 대출의 경우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(T1~T4 등급)을 요건으로 함)	A3	- 자구 수정
4~5	(생략)	(생략)	(생략)	4~5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6	추천기업 <sup>5)</sup>	- 강원도청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향토기업(장수기업)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- 강원도청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,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, 춘천상공회의소, 원주상공회의소,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,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(제조업 중소기업<소상공인 등 개인기업 제외>)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추천한 업체(<별지5>서식)	A6	6	추천기업 <sup>5)</sup>	1) 강원도청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향토기업(장수기업) 2)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3) 춘천상공회의소, 원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*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*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(<별지 제5호 서식>) *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함(소상공인 등 개인기업 제외) 4) 강원도청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,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, 강원정보문화진흥원,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(<별지 제5호 서식>)	A6	- 전략지원부문과 일반지원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각 항목을 세부 번호로 구분 -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추천기업 추가 및 자구 수정
7	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	- 영서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1) ~ 4) (생략) 5) 건설기자재(레미콘, 아스콘) 생산업체 6)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군납필증 등 적격인정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체 7) (생략)	A7	7	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	- 영서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1) ~ 4) (현행과 같음) 5) 건설기자재(레미콘,아스콘)생산업체(KSIC: 23322, 23991) 6)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적격인정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체(KSIC: 10~11) 7) (현행과 같음)	A7	- 업종을 명확히 하기 위해 KSIC 코드 명시 - 안전군납필증 문구 삭제 및 KSIC 코드 명시
8~14	(생략)	(생략)	(생략)	8~14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
현행				개정(안)				비고
번호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2)</sup>	전산코드	번호	지원부문	선정기준 <sup>1)2)</sup>	전산코드	
15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	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) (생략) 2) 운수업(KSIC: 49, 51~52) 3) ~ 7) (생략)	A16	15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	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) (현행과 같음) 2) 운수업(KSIC: 49, 51~52)<택시운송업(KSIC:49231) 중 <u>개</u> 인택시업은 제외> 3) ~ 7) (현행과 같음)	A16	- 개인택시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명시
주 : 1) ~ 5) (생략)				주 : 1) ~ 5) (현행과 같음)				



